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사업명	「서울새활용플라자 셔틀버스 운행」
주관기관	서울디자인재단 전략사업본부

2017년 7월

서울디자인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과업지시서

가. 과업명

동 과업지시서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셔틀버스 운영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나. 과업 목적

-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이용고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를 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관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 범위

1. 용역대상 및 기간, 규모

구 분	구 分	용역기간	용역규모	운행일 및 횟수
1호	25인승	2017.08.01. ~ 2017.12.31(5개월)	25인승 1대, 운전원 2명	주 6일, 왕복 18회
2호	25인승	2017.09.01. ~ 2017.12.31(4개월)	25인승 1대, 운전원 2명	주 6일, 왕복 4회
3호	40인승 이상	2017.09.01. ~ 2017.12.31(4개월)	40인승 이상 1대, 운전원 1명	상시 대여

- 용역 과업기간 : 용역 과업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개월로 한다. 단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다.
- 운행 정보 : 불임1 참조 (단,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차량 운행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 할 수 없다.
2. 상시대여 버스의 경우, 대여를 위한 사전 협의기간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1, 2호 차량을 용역업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까지 차량을 매일 이동시키는 경우는 유류세 및 기타 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관계로,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여 상주시키는 것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불임-1”노선에서 “발주부서”的 특별한 사정으로 노선을 추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거리에 대한 비용은 “발주부서”가 지불한다.
5.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발주부서”가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개월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6. “발주부서”的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보수공사 등)으로 차량운행 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기간에는 고정비용(산출내역서 중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다.
7.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회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회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재단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的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월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 결행시 공제내역 : 결행횟수 × 해당 차량 1회운행거리(km) × 단가(원/km) × 3배

마. 차량 관리

1. 운행할 차종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운행거리 25만km미만의 25인승 2대 및 40인승 이상 1대로써 냉·난방장치가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고, “발주부서”가 지정한 로고로 차량 전체 혹은 일부를 도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

부서”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별과금 및 사고발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부서”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 및 운전기사를 대체하여 결행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운전기사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기사를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2.08.02.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시설로 운전기사 사전조회 후 운행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 전보 등의 귀책사유 발생 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부서”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한 성실하지 못한(예 : 무단결근, 지참, 불친절행위 등) 운전기사의 근무태도, 비리사실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전기사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용역산출 내역 기준상 총 범위 내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인건비 등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대형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실제 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인적사항으로 운전기사 개별 재직증명서와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7. 근무자는 신체 건강한 자 중에서 다음 기준에 맞게 배치(단, 미성년자, 노약자 배치는 금함)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시 즉시 동등 이상 요건의 근로자로 충원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운전불량, 불친절 또는 운전능력 미흡으로 교체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5일전에 신규 운전기사를 교체 투입하여 노선 숙지 및 회원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인원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셔틀버스의 운행이 결행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월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 결행시 공제내역 : 결근일수 × 해당 차량 1일 운행거리(km) × 단가(원/km) × 3배

사.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1.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주부서"에서 먼저 손해배상 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발주부서"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통하여 충당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5. 업무 수행상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업무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셔틀버스 운행 계약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블랙박스 포함)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계약 중도 해제 및 해지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계약상대자"가 셔틀버스 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 (2) 셔틀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상대자"가 정한 차량현황(블랙박스 장착여부 포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때
 - (3)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용역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 (5)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명령,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6) "계약상대자"의 운영방침 위반 및 "계약상대자"의 위반, 불이행 등이 지속 적발되는 경우
 - (7) 법규개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될 경우
 - (8)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운전기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사에 대하여 교체 요구에 기한 내 응하지 아니한 경우
 - (9)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 측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한 수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 (10)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부서"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11) "발주부서"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부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발주부서"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
 - (12)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 (13) "발주부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부서”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발주부서”에 귀속된다.

자.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차.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부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주부서”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및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나 “발주부서”의 예규에 따르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거나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1] 운행 정보 - 셔틀버스 운행 노선 및 정류장 위치, 운행 시간표

[붙임 2]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붙임 3] 차량 운행 일지

【붙임 1】

운행 정보-셔틀버스 운행 노선 및 정류장 위치, 운행 시간표

운행노선

1호선	소요시간	2호선	소요시간
서울새활용플라자 → 장한평역	5분	서울새활용플라자 → 세운상가	25분
장한평역 → 서울새활용플라자	5분	세운상가 → DDP	6분
		DDP → 서울새활용플라자	19분
총 소요시간 1회 운행시간	10분 20분	총 소요시간 1회 운행시간	50분 90분

정류장 위치



서울새활용플라자 :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물 정면 입구



장한평역 : 장한평역 7번 출구 앞



세운상가 : 세운상가 대영조명상사 앞



DDP : 살림터 D5 입구 앞

* 정류장 위치는 용역업체 및 협력기관과의 협장 담사 및 조율 이후 변경될 수 있음

운행 시간표

- 1호차 : 첫차 08:30 / 막차 18:15

구 분	출발 시간표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호차	08:30	09:00	09:30	10:00	10:30	11:00	12:00 ~13:00 점심시간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1:30	13:00	13:30	14:00	14:30	15:00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5:30	16:00	16:30	17:00	17:30	18:15	

참고 1. 운행시간은 정차시간 및 방문객 대기시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운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막차는 새활용플라자에서 18시에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5분 여유시간을
두고 출발하는 것으로 함

- 2호 : 첫차 10:00 / 막차 17:00

구 분	출발 시간표				비 고
	1회	2회	3회	4회	
2호	10:00	13:00	15:00	17:00	12:00 ~13:00 점심시간

- 3호 : 수요량에 맞춰 조절

구 분	출발 시간표		비 고
	3호	4호	
3호	픽업 일정에 맞춰 출발시간 및 첫차/막차 시간, 운영일 및 횟수 탄력적 조절 (예상 : 일 1회)		

※ 운행코스 및 일정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및 연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구 분	배상금 공제 사유
1일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1회 이상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 예정된 정차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음주운전(숙취상태 포함)한 경우 ○ 1회 이상 개문발차,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 기타 "발주부서"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1회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고장으로 대체차량 연식이 초과한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대체한 경우 ※ 동일 차량보다 대형으로 대체할 경우 동일 차량으로 유류비 지급 ○ 1회 이상 고의로 차내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아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 1회 이상 승객과의 언쟁, 불친절 등으로 승객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 공사의 감독자로부터 차량정비, 세차불량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1회 이상 고의적인 지연출발, 지연 도착한 경우 ○ 기타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붙임 3】

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 ()

결 재	담당	팀장

차량번호 (호차)	운행 상황	전일누계	km	유류 수불 현황	전일잔량	L
		금일운행	km		급 유 량	L
		누 계	km		소 비 량	L

연번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현황(분)			탑승인원(명)	운행 확인
			출 발	도착	운행시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합 계							
승차인원 현황	일계	명	/ 월계	명	/ 년합계	명	
특이사항							